



Mercedes-Benz

메르세데스-벤츠
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(주)
Mercedes-Benz Financial
Services Korea Ltd.
A Daimler Company

메르세데스-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고객님을 위한 신차교환 프로그램 안내문 (2020년 5월 1일 이후 금융계약을 체결한 고객)

● 메르세데스-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신차교환 프로그램이란?

메르세데스-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고객님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고객님께서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해 차대차 사고를 당하고 (쌍방과실의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이 50%이하인 경우만 적용), 수리비용(공임포함)이 차량구매가격(VAT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기준)의 30% 이상 발생 시, 고객님께서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메르세데스-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고객님의 차량을 신차(동일차종, 동일모델)로 교환하여 드리고, 교환차량의 취/등록세를 5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.

● 신차교환 프로그램 주요 고지사항

신차교환 프로그램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서는 아래의 사항을 ‘필히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고객님께서 교통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차교환 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,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- ② 객관적인 과실비율 및 사고경위, 가해자가 판별될 수 없는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.
- ③ ‘수리비용’이라 함은 가해/피해 자동차보험회사가 정비센터에 지급한 최종 보험금 중 차량수리에 소요되는 직/간접 수리비용, 공임 및 부가세를 포함한 실질비용을 말하며, 대차비용(렌터카비용), 가격하락손해금(격락손해금) 및 견인비용 등 차량수리와 관계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.
- ④ ‘차대차 사고’는 가해자가 존재해야 하고, 타인 과실이 50%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. (경찰서 또는 자동차보험회사 사고확인서 첨부) 과실여부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근거로 가해/피해자 자동차 보험회사가 합의한 과실상계율만 인정합니다. 단, 과실비율 판정 지연 시, 자동차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거 과실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⑤ 고객님께서 차량을 교환하시고자 할 경우, 타인의 보험과 자신의 보험(또는 자비)로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완료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며, 반드시 메르세데스-벤츠 공식/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셔야 합니다.

Mercedes-Benz Financial Services
Korea Ltd.
9th Fl., Seoul Square Building,
541, Namdaemunno 5-ga,
Seoul 100-714, Korea
Phone +82 2 1577-2320
Fax +82 2 6456-2593
www.mercedes-benz-financial.co.kr
www.benzfs.com





- ⑥ 차량의 원상회복 후 수리된 차량의 양도를 위한 기초서류 및 원상 회복된 차량을 신차교환프로그램 지정 매각업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.
- ⑦ 가격하락손해금 (격락손해금)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량은 신차보상비용으로 지급할 신차대체비용에서 가격하락손해금을 차감합니다. 그러므로, 온전하게 신차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가격하락손해금을 메르세데스-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지정계좌로 입금 하셔야 합니다. (가격하락손해금(격락손해금)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차량(구입 후 2년 이내) 소유자에 차량사고에 따른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제 비용을 의미합니다.)
- ⑧ 최초 구입 고객님에게서 타인에게 차량이 양도될 경우, 신차교환 보상 서비스의 효력은 소멸되며 고객님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. 단, 금융계약이 승계되는 경우, 신차교환 보상 서비스는 유효합니다.
- ⑨ 고객님께서 차량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특정 할인율이 적용되더라도 보험회사에 통보된 차량구매가격(VAT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기준) 기준에 근거하여 보험료, 사고비용을 산정합니다. 또한 차량판매 시 공식 옵션품목 이외에 고객님께서 임의적으로 장착한 품목은 차량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⑩ 신차교환 대상차량은 메르세데스-벤츠의 판매차량 중 메르세데스-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 고지된 차량에 한하며, 렌터카 및 데모카, 택시,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,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 되는 차량 및 경주용차 등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.
- ⑪ 신차교환은 동일차종, 동일모델에 한하여 1차량 1회에 실시하며, 당 서비스로 교환하신 차량은 신차교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⑫ 사고 당시 차량의 (메르세데스-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통해 행사기간 중 판매한 자동차) 운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일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담보하는 운전자 및 자동차등록명의자 (단, 등록명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분기준 상위 2명에 한함)
 - 무보험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명의자 (단, 등록명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분기준 상위 2명에 한함)
- ⑬ 다음의 사고는 신차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 - 상대차량이 방호벽 또는 타물체를 1차 충격한 후 부보차량이 그 물체와 충격할 경우
 - 상대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져 운행 중인 부보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





● 신차교환 프로그램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
- ① 고객님의 단독으로 행해졌거나, 고객님의 임직원, 협력자,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에 의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행한 사기행위 또는 부정직으로 인한 행위
- ② 신체상해,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또는 모든 재물손해
- ③ 보상 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한 비용
- ④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
- ⑤ 전쟁, 침략, 내란, 반란, 혁명, 폭동, 테러, 군 권력에 의하거나 정부, 공공기관 또는 자치당국에 의한 몰수, 국유화, 명령 또는 재물의 파괴나 손해
- ⑥ 보장지역(대한민국)에서 파업, 직장폐쇄 또는 근로방해,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중인 자에 의한 손실, 영업의 중지 또는 지연
- ⑦ 지급불능, 재정불능 또는 파산, 지불유예, 부도, 청산, 재산관리 또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
- ⑧ 법령위반 (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)
- ⑨ 차량의 전부손해사고 (전부손해사고란, 피보험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,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의 수리비(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)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차량 시장가치의 120%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. (단, 고객님이 전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원상회복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함)
- ⑩ 도난사고 및 침수사고
- ⑪ 주차시 사고 (단, 정차시 사고는 보상합니다.)
- ⑫ 차량의 판매수수료 및 제세금
- ⑬ 교통사고가 발생한후 수리한 피보험자동차(원상회복차량)를 운행한 경우
- ⑭ 결함있는 피보험자동차의 회수(리콜(Recall))로 인한 손해. 다만,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회수(리콜(Recall))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⑮ 사고가 접수된 이후에 신차를 교환할 수 없는 경우 (자동차판매사 또는 자동차제조사가 국내에서 해당 신차를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)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판매, 공급된 신차교환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




● 신차교환 보상 프로세스

- ① (주)다다이즈에서는 차량 사고 시 해당 사고를 최초로 접수하여 해당 사고차량의 신차교환 대상여부를 메르세데스-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 확인합니다.
- ② 해당 사고차량의 신차교환 대상 차량으로 파악되면, 고객님(혹은 담당 영업사원)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, 해당 차량의 정비센터 입고를 안내합니다.
- ③ 해당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면, (주)다다이즈에서는 제출서류를 고객님(혹은 담당 영업사원)으로부터 취합하여 담당직원에게 전달하고, 신차교환을 위한 보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.
- ④ 보상금 지급이 요청되면 지정된 손해사정법인에서 신차교환요건 심사를 위한 실사작업을 진행합니다.
- ⑤ 보상요건 중 차대차 사고에서 계약자의 고객이 피해자인 조건에 대하여는 1차로 경찰서에 보고된 [사고사실확인원]에 기초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 [사고사실확인원]이 부재할 경우, 가해자 및 피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의 과실비율이 명시된 보험금지급결의서를 2차 서류로 하여 심사합니다.
- ⑥ 보상요건 중 차량수리비가 차량판매가격(VAT포함)의 30%이상 됨을 확인하는 기준시점은 우선 지급하는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의 지급결의를 기준으로 하며, 수리비 항목에는 공임, 부가세가 포함되고, 해당 정비소와 보험회사 간의 부품할인규약에 대하여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⑦ 사고 전 상태로 차량을 수리(원상회복)을 완료한 경우, 즉시 해당 차량을 매각합니다.
- ⑧ 손해사정법인은 유관서류와 수리가 완료되어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해당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지급결의가 완료되면, 지체 없이 요건 심사를 종료하고, 요건승낙여부를 표시하여 전달합니다.
- ⑨ 통상적으로 사고차량의 서비스센터 수리가 완료된 후 신차교환을 위한 모든 서류가 취합 및 전달되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, 신차교환 보상처리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10 일 정도 소요됩니다.

당 프로그램은 서비스 운영상의 사유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보상처리에 필요한 서류 미비 등 고객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불가 및 처리 지연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 보다 자세한 문의는 (주)다다이즈(전화 : 1644-0746 / 카카오톡 : https://pf.kakao.com/_Jabaxb)로 문의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